

# - 2025년 스마트 특성화 기술전환 기반구축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제작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2025년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건설·농기계 산업의 전동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5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익산시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1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전북지역 건설·농기계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동화 기술지원 (시제품제작)을 통한 도내 건설·농기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육성

### □ 지원기간

구 분	기 간
시제품제작	협약체결일 ~ 2025. 10. 31.(금)까지

### □ 지원대상: 도내 건설·농기계(본사, 공장, 연구소 등)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단, 지원기간 내 도내로 이전 예정기업 포함)

- \* 전·후방 연관기업: 건설·농기계 완제품 제조뿐만 아니라 전동화와 관련된 제품, 부속품, 요소부품, 모듈 등을 개발하는 기업 포함

### ※ 지원제외 대상

- ≫ 지원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신청 사업이 (재)전북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기간 내, 도내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2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지원건수	담당자	지원대상
시제품 제작	• 전동화 농기계(자주식,보행형) 제품/작업기/부속품 등	4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10%이상)	12건 이상	전북테크노파크 손현화 책임 (063-720-3715)	도내 기업
	• 전동화 건설농기계 완성차용 전기구동 시스템, 제어기 및 주요 구성 모듈 등	7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10%이상)	2건 이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현재 수석 (063-920-1284)	
	• 전동화 건설농기계 전자유압부품, 컨트롤러, 주요 구성 모듈 등	8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10%이상)	4건 이상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정건 그룹장 (063-734-2636)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 계산 양식 참고)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소진까지 추가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 지원 기관 보유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제품 제작 지원 \* 필수

\* (붙임2) 장비리스트의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 ○ 시제품 제작 시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

\* 시제품제작 시 소요되는 재료 또는 구성모듈은 지원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각 기관별 지원한도 이내 재료 구입 후 시제품 제작)

\* 총 사업비 예시(붙임의 총 사업비 계산 양식 참조)

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 (90%, 부가세포함)	기업부담금 (10%, 부가세포함)
1	10,000천원	9,000천원	1,000천원
2	11,112천원	10,000천원	1,112천원
3	44,445천원	40,000천원	4,445천원

※ 기업부담금은 10%이상 이어야 함.

## 3

## 유의 사항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 시제품 제작 지원의 경우 장비리스트의 장비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하며 장비 이용 시점에 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 필요. 장비 미 활용 시 지원 불가
- 협약기간 내에 유형적 시제품이 필수적으로 발생 하여야 함.
- 시제품 제작지원 세부내용 가이드에 부합하는 지원 업체가 없을 경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추가공고 할 수 있음.
- 시제품 제작지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중복수혜 불가능함.

## 4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발표평가
  - \* 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 또는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선정기준

-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점수 산출방법 : 평가위원회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확정
- 동점의 경우 계획의 타당성 등 고득점 항목 점수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개별통보

###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타당성 (40점)	지원 적합성 및 계획 타당성	20점
	기술경쟁력	20점
사업의 우수성 (40점)	사업성	15점
	성장가능성	15점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사업 진행 역량 (20점)	추진기반 확보	10점
	경영능력 및 의지	10점

## 5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방법	추진일정
수혜기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전북테크노파크	공고일(2025. 05.)부터 수시 모집
대면(발표)평가 및 수혜기업 선정	(재)전북테크노파크	사업지원 타당성 및 적합성 평가 (6월 초)
협약 체결	(재)전북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선정 후 1주 이내
사업수행	수혜기업 ⇄ 지원기관 공동 수행	시제품제작 (2025. 10. 31.(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수혜기업 → (재)전북테크노파크	시제품제작 (2025. 10. 31.(금)까지)
성과 모니터링	(재)전북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지원 후 3년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6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및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이메일	연락처
전북테크노파크	손현화 책임	handhh@jbtp.or.kr	063-720-37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현재 수석	hjshin@kitech.re.kr	063-920-1284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정건 그룹장	kjeong8@koceti.re.kr	063-734-2636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정서식 (붙임 1)	(붙임 1)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필수
	(붙임 2)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지원 세부계획서	필수
	(붙임 3) 추가 제출 서류	필수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사업비 소요비용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비교견적서)	필수
	기타 제품 설명 또는 실적 증빙 관련 자료	필요 시

## 7

## 기타사항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지원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수출, 고용 등) 등의 자료요청 시 선정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2020.1.1.)됨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지원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이 환수(이자 포함)되고, 최대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 허위 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5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 × 3
-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 × 2

- 붙임 1. 신청서, 추가제출서류, 결과보고서 1부.  
2. 장비리스트 1부.  
3. 총사업비 계산양식 1부. 끝.